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와 건설관련 자문을 하는 건설분야의 매우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건설공사 업체선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십 년간 위원에 대한 업체의 로비가 관행처럼 이어져왔고 뇌물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턴키 설계 등을 평가하는 민간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정부에 제안하였고 2020년 12월 8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지방·특별심의 및 자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도 장기 연임으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은 2회까지의 연임 조건을 1회로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